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70							. 11. 9
· U.S.					세 줄	イ・	안 산	শ ক
□ 제	안이유							
	「지하안전관i 안전점검 내용 생활환경을 2	을 개정함	으로써,					
□ 주	요내용							
) 지하시설물 및	주변 지변	<u>나</u> 에 대한	안전점검	일부니	1용 신	(설(안	제13조)
) 공동조사 대학	행 관련 조	항 신설	(안 제14:	조)			
가	정조례안 : -	붙임1						
□ 신	· 구조문대비]亚:崔	임2					
□ 괸	계법령발췌시] : 붙임	3					
□ 괸	런사업계획서] : 해당	사항 없	음				
<u></u> બં	산수반사항	: 붙임4(비용추기	계서 미침]부 /	아유 /	러)	
•	전예고(결과) 입법예고 : 20	, –		2022. 1	0. 12	2. (2)	1일간)	
\bigcirc	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: 방침결정문:							

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(공동조사의 대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상호 협의한 경우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드는 비용을 사전 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·과	건설도로과		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설도로과장 김 기 선		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로시설1팀장 김 홍		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장 현 익 (행정 2657)		

〈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3조(지하시설물 및	주변지반에	대한	제13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
	략)	. –	안전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〈</u> 신 설〉			②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점검의
			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
			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
			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
			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<u>〈신 설〉</u>			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
			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
			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
			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
			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
			<u>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		$\underline{\oplus}$ (현행 제 2 항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		제14조(공동조사의 대행 등) ① 시장은
			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효
			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
			자와 상호 협의한 경우 공동조사의 일부
			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.
		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수
			탁하여 대행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
			자에게 공동조사에 드는 비용을 사전
			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<u>제14조</u> (생 략)			<u>제15조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